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슴기살균제·참사 피해 학생을 위한 교육상 시책 마련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07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학생을 위한 교육상 시책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24.
3. 회 부 일 : 2025.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현재 재학 중인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인 학생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발급받은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질병결석을 인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가슴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장기적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질병결석을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그 밖의 참사 피해자인 학생이 불가피하게 질병결석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슴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의 원활한 학업이수를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Ⅲ. 검토의견

1. 가습기살균제 · 참사 피해 학생을 위한 교육상 시책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 피해자인 학생에게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학생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 피해자인 학생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생명·신체상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함. 2006년부터 원인 불명의 폐 손상 사례가 다수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정부의 역학조사와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인정 기준과 지원 제도가 점차 보완·확대되고 있음.

피해자는 폐 질환, 천식, 호흡기 장애 등 만성적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학생 피해자의 경우 2025년 기준 90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는 장기간 치료 및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학교생활 유지가 곤란한 실정임.

< 초·중·고교 재학 연령대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 >

구분	2023년	2024년	2025
출생연도	2005~2016년생	2006~2017년생	2007~2018년생
인원	1,192	1,068	907

자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학생은 ‘가슴기 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및 ‘건강모니터링 참여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질병결석은 출석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장기 입원 치료로 각 학년과정의 수료 기준인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요건¹⁾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료가 어려운 상황임.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이에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에 대하여 수업일수와 교육 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입원·치료 등으로 통상적 출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의 학업 지속성과 교육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기대됨. 이를 통해 단순히 질병결석 인정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웠던 피해 학생의 학업 중단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²⁾, 대법원의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판결³⁾,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발표⁴⁾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 범위 확대 기조와 맥락을 같이하는 입법 취지임.

□ 또한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참사 피해 학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사회적 참사로 인한 학생 피해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음.

2) 법률 제14566호, 2017.2.8. 제정

3) 대법원 2024.6.27. 선고 2024다226887

4) 관계부처합동, 2025.12.24.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사 피해자’의 개념 범위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현행 입법례에서 ‘참사’ 용어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⁵⁾ 특정 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에서만 사용된 바 있으며, 유사 개념인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임⁶⁾.
- 둘째, 가슴기살균제 피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특례 규정 신설이 장기 치료나 환경성 질환 등 유사한 사유로 학업에 제약이 있는 학생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서는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① 성격장애, 정서·행동문제, 지적 기능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 ② 학업 중단

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만 개정안과 동일한 ‘참사’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각각 특정한 참사를 지칭하였음.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학생, ③ 학업 중단 위기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바⁷⁾, 개정안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만을 추가할 경우 제도 간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됨.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가습기 살균제 등 각종 사회적 참사 피해로 인해 건강 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질병결석으로 인한 불이익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각종 사회적 참사의 경우 기본법이 없어 특별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바⁹⁾, 대통령령으로 참사를 정하는 것은 입법체계 상 맞지 않으므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동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질병결석의 필요성이 높은 희귀·난치질환 등 건강 취약학생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건강상 어려움으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7)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정서·행동 문제,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8) 질병결석의 경우 출결이 미인정되어, 진급을 위한 수업일수(3분의 2)에 포함되지 않음

9)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세월호피해자지원법